

울산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4가단1244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황유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황규화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4. 7. 18.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86960호 구상금 사건에서 2015. 6. 17. “C는 원고에게 6,010,9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242035 구상금 사건에서 2022. 7. 6. “C는 원고에게 46,008,4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E이 2024. 1. 10. 사망하여 자녀인 C, F 및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4.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4. 7.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24. 8. 12.을 기준으로 129,807,260원이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C가 분할협의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상국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24. 7. 18. 체결된 협의분할약정 중 C의 지분인 1/3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여분 주장

피고는 C가 2000년경 해외로 이주하여 망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07년경부터 망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여 봉양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형평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이 정한 기여분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이 수정된 것)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지만, 이때 기여분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5197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약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오랜 기간 망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망인을 간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그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을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 또한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